

## 폴란드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 차 례

<b>I. 국가 개황</b> .....	1
1. 일반 개황 .....	1
2. 폴란드 역사 .....	2
3. 경제 개황 .....	3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4
<b>II. 경제 · 정치 현황</b> .....	5
1. 경제 현황 .....	5
가. 국내경제 .....	5
나. 대외경제 .....	7
2. 정치 · 사회 동향 .....	29
가. 정치동향 .....	29
나. 사회동향 .....	30
<b>III. 주요 산업</b> .....	35
1. 농업 .....	32
2. IT산업 .....	32
3. 자동차산업 .....	32
4. 철강산업 .....	32
5. EU 가입이 폴란드 산업에 미치는 영향 .....	32
<b>IV. 외국인투자 환경</b> .....	36
1. 외국인투자 정책 .....	36
가. 개요 .....	36
나.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 .....	36
다. 외국인투자 절차 .....	36
2. 외국인투자 여건 .....	42
가. 무역 및 관세제도 .....	42
나. 외환 및 금융제도 .....	46
다. 조세제도 .....	49
라. 노동 및 임금제도 .....	49

<b>V. 우리의 진출확대 방안</b> .....	51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	51
가. 교역현황 .....	51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49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53
2. 진출확대 방안 .....	59
가. 진출시 유의사항 .....	56
나. 폴란드의 EU 가입이 한국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	59
다. 진출전략 및 진출 유망분야 .....	59
라. 정책과제 .....	66

## < 요약 >

□ 폴란드 경제는 GDP 기준 세계 22위(2,095억 달러, 2003년), 1인당 국민 소득 세계 36위(5,480달러), 교역규모 29위(1,277억 달러)

- 세계 GDP의 0.58%, 우리나라 GDP의 34.6%
- 2001년 이후 지속되던 1%대의 저성장을 하락추세를 벗어나 2003년부터 성장 회복세로 전환
  - o 2003년 경제성장률 3.8%, 금년 5.5~6.0% 성장 전망
- 2004년 5월 EU 가입, 주 무역상대인 EU의 경기회복, 폴란드 진출 선진국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확대로 수출이 급성장
  - o 폴란드는 중·동유럽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2003년 교역규모 455백만 달러)

□ 정치·외교상황 : EU 가입을 통한 유럽 복귀, 벨카 신임 정부 출범

- 2004년 5월 1일 EU 정회원국으로 가입, 체제전환 이후 최우선 국가 목표 이던 유럽 일원으로서의 복귀 달성
- 밀러 총리의 중도 하차로 2004년 6월 벨카 총리가 이끄는 신임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여소야대 속에서 예상보다 순조로운 출발 보임.
- 우리나라와는 정치·외교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산업 및 무역구조 : 자동차·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전환중

-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산업의 중심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 중
- 산업구조는 운송·금융 등 서비스부문이 45.1%, 제조업이 3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임업은 3.2%에 불과

□ 주요 무역상대국 : 최대 무역상대국은 독일

- EU와의 무역이 전체의 약 7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수입 모두 독일이 최대 무역상대국
- 주요 수출품목 : 기계 및 운송장비(33.1%, 202억 달러), 공업제품(20.8%, 127억 달러), 생필품 등(15.1%, 92억 달러)

□ 중·동유럽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

- 2003년 말 현재 FDI 유입 잔액은 521억 달러로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최대의 투자국(총투자액 기준 6.5억 달러)
- 주요 투자국은 프랑스(20.0%), 네덜란드(14.2%), 미국(12.5%), 독일(12.1%)이며, EU 국가가 전체 투자의 74.1%를 차지

□ EU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 노력 필요

- 관세인하 품목 및 경제성장에 따른 현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 필요

# I. 국가 개황

## 1. 일반 개황

- 국 명 : 폴란드(Republic of Poland)
- 면 적 : 311,904km<sup>2</sup>(한반도의 1.4배)  
체코 · 독일 · 리투아니아 ·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 접경
- 인 구 : 38.2백만 명(2003년)
- 주 요 도 시 : 바르샤바(169), 우치(785), 크라코프(757), 브로츠와프(639),  
(인구: 만명) 포즈난(577), 그단스크(462), 슈체친(415), 루블린(358)
- 인 종 구 성 : 폴란드인(98.7%), 독일계 등 기타(1.3%)
- 종 교 : 로마카톨릭(95%), 개신교, 그리스정교 등 기타(5%)
- 기 후 : 동부 - 대륙성 기후, 서부 - 해양성 기후  
(연평균 기온: 7~10℃, 겨울 최저: -21℃, 여름 최고: 34℃)
-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 정 부 형 태 :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 독 립 : 1918. 11. 11
- 국 가 원 수 : 크바시니에프스키(Aleksander Kwasniewski)대통령  
(2000. 10. 18 재선, 임기5년, 1회 연임 가능, 직접선출)
- 주 요 각 료 : 벨카(Marek Belka): 총리(2004. 6. 24 취임, 대통령이 지명)  
하우즈너(Jerzy Hausner): 부총리겸 경제 · 노동장관  
치모세비츠(Wlodzimierz Cimoszewicz): 외교장관
- 의 회 : 양원제(상원 - Senate 100석, 임기 4년, 직접선출)  
(하원 - Sejm 460석, 임기 4년, 직접선출)
- 지 방 조 직 : 16개 도(Voivodship), 380개 군(Powiat), 2,478개 면(Gminia)
- 주 요 정 당 : 여당 - 민주좌파연합(SLD), 노동당(UP)  
야당 - 시민플랫폼(PO), 자위당(Self-Defence), 법과정의당(PiSP)
- 군 사 력 : 15만 명(육군 8.9만, 해군 1.4만, 공군 3.1만, 국방부직할군 1.6만)
- 국 제 기 구 : UN, EU, IBRD, IMF, WTO, OECD, IFC, NATO 등

## 2. 폴란드 역사

### 건국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 966년 : 미에슈코 1세의 피아스트 왕조가 지배하는 봉건국가 형성
- 1399년 : 야기엘로니안 왕조 시작
- 1572년 : 귀족 공화정(선출왕 시대)
- 1795~1918년 :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분할 지배기
- 1918년 : 독립 및 폴란드 공화국 성립
- 1939~1945년 : 나치 점령시대

### 2차 세계대전 이후

- 1945년 : 독일 항복으로 망명정부 인사와 친소파의 통일정부 수립
- 1980년 : 그단스크 조선소 폭동 및 자유노조 출범
- 1989년 : 자유총선으로 최초의 비공산 정부출범
- 1990년 : 바웬사 대통령 당선
- 1995년 : 민주좌파연합 당수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 당선
- 1999. 3. 12 : NATO 가입
- 2004. 5. 1 : EU 가입

### 3. 경제 개황

- 국내총생산(2003년) : 2,095억 달러(우리나라의 약 1/3 수준)
  -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2003년) : 6,050억 달러(전 세계 GDP의 1.7%)
  
- 경제성장률 : 2001~02년중 1%대의 저성장을 보였으나 2003년 3.8%의 성장을 시현
  
- 물가상승률 : 2000년 이후 하향추세(2003년 0.7%)
  
- 무역규모(2003년) : 수출 610억 달러, 수입 667억 달러(2002년 기준 세계 29위)
  - ※ 우리나라(2003년) : 수출 1,976억 달러, 수입 1,755억 달러(2002년 기준 세계 13위)
  
-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2003년) : 42억 달러
  - ※ 우리나라(2003년) : 38억 달러
  
- 대외채무(2003년 말) : 859억 달러
  - ※ 우리나라(2003년 말) : 1,325억 달러
  
- 외환보유액(2003년 말) : 326억 달러
  - ※ 우리나라(2003년 말) : 1,545억 달러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89. 11. 1(북한과는 1948. 10. 16 수교)
  
- 인사교류 : 김운용 대통령 특사 방폴(1990. 6), Bielecki 총리 방한(1991. 6), 바웬사 대통령 방한(1994. 12), 이수성 총리 방폴(1996. 5),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 방한(2002. 6), 노무현 대통령 방문 예정(2004. 12)
  
- 주요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약(1991. 6), 항공협정(1991. 10), EDCF차관공여협정(1993. 2), 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이상 1993. 6), 사증면제협정(1993. 11), 외무부간 협력의정서(1997. 3), 세관협력협정(1999. 6)



- 무역규모(2003년) : 4.5억 달러(수출 3.8억, 수입 0.7억), 지속적인 무역흑자 시현
  - ※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50대 수출대상국, 68대 수입대상국(2003년 기준)
  - 주요 수출품목 : 영사기기, 자동차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 주요 수입품목 : 형강, 자동차부품, 난방·전열기기, 가구 등
  
- 해외직접투자(2004년 9월말 현재) : - 총투자 기준(58건, 646백만 달러)
  - 투자잔액 기준(52건, 520백만 달러)

## II. 경제 · 정치 현황

### 1. 경제 현황

#### 가. 국내경제

<표 II-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sup>f</sup>
G D P	억 달러	1,666	1,856	1,914	2,095	2,382
1 인 당 G D P	달러	4,350	4,850	5,010	5,480	6,240
경 제 성 장 륜	%	4.0	1.0	1.4	3.8	5.5
물 가 상 승 륜	%	10.1	5.5	1.9	0.7	3.4
재 정 수 지 / G D P	%	-1.8	-3.5	-3.6	-3.9	-5.5
실 업 율	%	14.0	18.0	19.7	20.0	19.6

자료: EIU

#### (1) 경제성장

##### □ 2003년부터 뚜렷한 성장회복세로 전환

- 폴란드는 중·동유럽 최대의 시장으로 경제규모는 주변 경쟁국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한 것보다 크며,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주변국으로 재수출하는 물량도 상당하여 실제 인구는 39백만 명이나 1억 명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임.
- 2003년은 수출증가, 내수확대, 소비자물가 등 제반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바탕으로 당초 정부 목표치 3.5%를 상회하는 3.8%의 실질경제성장을 시현함으로

써 1%대에 머물렀던 지난 2년간의 저성장을 벗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

- 폴란드 경제의 최근 성장은 EU 가입과 유로권 경제의 활성화, 유로화에 대한 주위티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등에 따른 큰 폭의 수출신장과 공업생산 증가가 주요 원동력이며, 개인소비 분야의 안정적 성장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04년 1분기 및 2분기에 6.9%와 6.1%의 성장을 각각 기록하였고 상반기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24%가 증가하는 등 금년 들어서도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있음.<sup>1)</sup>

## (2) 물가상승률

□ 2000년 이후 긴축정책과 식료품가격 안정에 힘입어 하향 안정세를 유지

- 1999년 중반 이후 유가상승 등의 외부적 영향으로 2000년 들어 물가가 10.1%까지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정책 시행과 식료품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2001년 이후 다시 한자리 수로 낮아졌으며, 2003년에는 0.7%라는 매우 양호한 지표를 보임.
- 2004년 들어서는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 2.5%를 넘어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uncil: MPC)는 8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전격 인상(현재 6.5%)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경기활성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약세, 유가와 식료품가격 인상, 부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연평균 물가는 정부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금년도 소비자 물가의 양등이 일시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의해 유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무역업체들의 폴란드 제품 대규모 구매로 가격상승이 유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가상승은 하반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2%대로 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임.

1) EU 집행위원회도 폴란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 5.9%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IMF와 국제적인 리서치 전문기관인 영국의 EIU는 이보다 다소 낮은 5.5%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한편,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재정정책 시행 등으로 2005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4% 대에 머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 (3) 재정수지

#### □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가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

- 2003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9%로 전년보다 확대되었는데 이는 지난 2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지연과 2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로 인한 실업기금의 과다 지출이 그 주요 원인임.
- 폴란드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신규연금과 조기정년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공공부문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농업과 중공업 부문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EU 가입에 따른 지출증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임금비율 과다 등으로 재정 유연성이 낮아 정부의 재정적자는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 그러나 지난 10월 5일 폴란드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 1~9월 재정적자는 약 73억 달러로(재정수입: 약 287억 달러, 재정지출: 약 360억 달러) 정부의 2004년 목표치의 63.9%에 머무는 다소 양호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2007년에 ERM2에 가입하고 2009년까지 유로화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4) 산업동향

#### □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전환중

- 체제전환 이전 사회주의식 중앙계획경제하에서 동국의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제조업과 농업이 중심(1988년 기준, 대 GDP 비중 54.8%)을 이루고 있었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부문으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음. 한편, 제조업부문 또한 광업 및 생필품 생산 위주에서 선진국 기업의 활발한 직접투자에 힘입어 전기·전자·자동차 등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 2002년 기준 GDP 구성을 산업별로 보면, 운송, 금융, 공공행정 등 서비스부문

이 45.1%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건설을 포함한 제조업이 30.6%, 무역이 2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임업은 3.2%에 불과함. 주교역국은 독일로 동국 전체 수출의 32.3%, 전체 수입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와 운송장비임.

## 나. 대외경제

<표 II-2>

주요 대외경제 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sup>f</sup>
수	출	억 달러	359	417	467	610	774
수	입	억 달러	482	493	540	667	825
경	상	억 달러	-100	-54	-50	-46	-33
외	국	억 달러	93	57	41	42	51
외	환	억 달러	266	256	287	326	346 <sup>주)</sup>
외	채	억 달러	633	633	695	859	989
총외채잔액/GDP		%	38.0	34.1	36.3	41.0	41.5
D S R		%	20.7	27.9	22.4	18.3	15.2
평균 환율		주위티/달러	4.35	4.10	4.08	3.89	3.70

주: 2004. 5월말 현재

자료: EIU, IFS, GDF, UNCTAD, Bloomberg

### (1) 수출입동향

□ 2003년 큰 폭의 수출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감소

- 2003년 폴란드의 무역규모는 총 1,277억 달러(수출 610억 달러, 수입 667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감소
- 2003년 수출은 전년 대비 30.6%, 수입은 23.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입증가

를 앞지르는 수출증가로 경상수지 적자액(46억 달러) 및 GDP 대비 비율(2.2%)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 및 운송장비의 수출입이 큰 폭으로 증가

- 2003년 주요 수출품목은 디젤자동차 및 관련부품, 전기기계, 화학제품, 화학공업제품 등이며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의해 수출확대가 이루어졌음. 특히, 디젤자동차는 서유럽의 수요증가와 포크스바겐 등 기존 진출사의 생산 확대 및 토요다 자동차의 생산 개시로 큰 폭의 수출증가를 보였음. 이외에 식료품, 육류와 냉동야채의 수출증가도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
- 수입에 있어서는 승용차와 공업용 원재료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는데 특히, 승용차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내 메이커의 내수판매는 부진했던 반면 수입차의 판매는 305천 대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한 것에 기인함.

<표 II-3>

2003년 주요 품목별 수출입 내역

(단위: 억 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기계·운송장비	202	33.1	기계·운송장비	259	38.8
공업제품	127	20.8	공업제품	143	21.4
생필품등	92	15.1	화학제품	100	15.0
식품및동물	41	6.7	광물성연료	62	9.3
화학제품	35	5.7	생필품등	59	8.8
기타	113	18.6	기타	44	6.7
합계	610	100.0	합계	667	100.0

자료: 폴란드 중앙통계국(GUS)

□ EU와의 무역 비중이 절대적

- 국가별로는 수출의 68.8%, 수입의 61.1%를 EU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각각 30.7%와 22.3%의 증가를 보였음. EU 국가 중에서는 독일과의 교역 비중이 가장 높아 총 수출의 32.3%, 총 수입의 24.4%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반면, 2004년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과의 교역이 각각 87%, 61% 및 50.2%로 독일의 34.4%보다 월등히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 중국 수출입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II-4>

주요 국가별 교역 비중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수 출	독 일	36.2	34.8	34.4	32.3	32.3
	이 탈 리 아	6.6	6.3	5.4	5.5	5.7
	프 랑 스	4.9	5.2	5.4	6.0	6.1
	영 국	4.0	4.5	5.0	5.2	5.0
수 입	독 일	25.3	23.9	23.9	24.3	24.4
	이 탈 리 아	9.4	8.3	8.2	8.4	8.5
	러 시 아	5.8	9.4	8.8	8.0	7.7
	프 랑 스	6.9	6.4	6.8	7.0	7.1

자료: 폴란드 중앙통계국(GUS)

(2)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중·동유럽 최대의 FDI 유치국

- 풍부한 저임의 숙련된 노동력,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중·동유럽 최대의 내수시장의 규모, 풍부한 부존자원 등 폴란드가 지닌 다양한 장점에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더해져 서유럽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FDI 유입이 이루어져 왔음.
- 2000년부터 세계 전체의 대외직접투자액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 대한 FDI는 꾸준히 이어져 2003년말 현재 투자잔액은 총 521

억 달러로 중·동유럽 최대의 투자유치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폴란드에 대한 FDI 유입은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보전은 물론이고 선진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기법 전수, 실업률 감소 등을 통해 동국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자동차 제조 및 금융부문이 투자의 중심

- 2003년 FDI는 공기업 민영화에 의한 유입은 계획대비 22%에 그친 부진한 실적을 보인 반면, 신규공장 설립을 통한 그린필드 투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하였음.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고 금융부문이 37.8%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1990~2003년 누계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투자실적을 분석해 보면 EU가 74.1%로 전체 투자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음. 이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가 최대 투자국이며, 네덜란드(14.2%), 미국(12.5%), 독일(12.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004년 들어서도 FDI 유입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기 진출 자동차제조 기업의 확장투자과 가전부문의 신규투자가 FDI 확대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표 II-5> EU 가입 중·동유럽 5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1992~97 (연간평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투자잔액
전 체	7,518	14,818	17,426	19,151	17,241	21,188	10,030	150,611
폴 란 드 ( 비 중 )	2,889 (38.4)	6,365 (43.0)	7,270 (41.7)	9,341 (48.8)	5,713 (33.1)	4,131 (19.5)	4,225 (42.1)	52,125 (34.6)
헝 가 리	2,924	3,828	3,312	2,764	3,936	2,845	2,470	42,915
체 코	1,304	3,700	6,310	4,984	5,639	8,483	2,583	41,033
슬로바키아	235	707	428	1,925	1,584	4,123	571	10,248
슬로베니아	166	218	106	137	369	1,606	181	4,290

자료: UNCTAD

### (3) 외채 상황

#### □ 2003년 중 외채가 큰 폭으로 증가

- 2002년 말 폴란드의 총 외채규모는 695억 달러(공공부문 294억 달러)로 GDP의 36.3% 수준이었으나 2003년 말에는 859억 달러(추정)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실적이 계획대비 22% 달성에 그치는 부진을 보인데다 철도와 철강부문의 구조조정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지연됨에 따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외채 도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폴란드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재원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보다는 양호한 국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본드 발행을 통한 조달을 우선할 계획으로 있어 동국의 외채는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외채 구조는 비교적 양호

- 그러나 조달한 외채의 약 80% 이상이 채무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채무인 관계로 외채구조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2004년 1~9월중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가 계획보다 적자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

화 추진이 전년과 같은 부진을 되풀이 하지만 않는다면 대외채무는 예상보다 그 증가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 (4) 외환보유고

2001년 이후 외환보유고는 꾸준히 증가

- 폴란드의 외환보유고는 2003년 326억 달러, 2004년 5월 기준으로는 346억 달러로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2003년 들어 보이기 시작한 뚜렷한 성장 회복세가 2004년에도 이어져 강력한 수출 증가를 시현하고 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FDI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환보유고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5) 국제신인도

양호한 국제신용도 유지

- 파리클럽(1991년)과 런던클럽(1994년)으로부터 대규모 채무감면 및 리스케줄링을 받은 후 채무구조의 개선과 지속적인 수출신장세 유지로 국제신인도가 제고 되었음.
- 폴란드의 신용등급
  - Moody's: A2
  - S&P: BBB+
  - Fitch IBCA: BBB+
  - OECD: 2등급(2004. 1)
- 폴란드의 총 외채규모는 절대금액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강력한 수출 증가세로 인하여 D.S.R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외채상환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2. 정치·사회동향

### 가. 정치동향

#### □ 중도좌파인 민주좌파연합(Democratic Left Alliance: SLD) 재집권

- 2000년 대통령 선거와 2001년 총선에서 민주좌파연합(SLD)이 자유노조연대의 후신으로 집권당이던 선거행동당(Solidarity Electoral Action: AWS)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함.
- 동 선거에서의 승리로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은 1995년 선거에 이어 재선되고, SLD는 1997년 총선 패배 이후 4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것임. 그러나 출범시 연정의 일원이던 농민당(Polish Peasants' Party: PSL)이 EU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농가보조금 문제로 2003년 3월 연정을 탈퇴함으로써 하원 의석수가 과반수 이하로 하락하였음.

#### □ 벨카 신임 총리 정부 출범

- 2001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밀러 총리가 부패 스캔들로 중도 하차하고 경제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벨카 총리가 2004년 6월 취임하였음.
- 의회내 과반수 의석 미달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집권당인 SLD를 탈퇴한 의원들이 새로이 창당한 폴란드사회-민주당(Polish Social-Democracy: SDPL)의 벨카 총리 지지선언과 최근의 강력한 경제성장 실적에 힘입어 하원에서 총리 인준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0월의 총리 재신임안도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오던 조기 총선의 부담을 떨쳐내는 등 벨카 정부의 출발은 예상보다 순조로워 보임.
-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과 공기업 구조조정 실시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져 있고 전임 총리와의 정치적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벨카 총리의 여러 시도들이 집권당내 계파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의 승리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EU 가입을 통한 유럽으로의 복귀

- 폴란드는 체제 전환과 동시에 유럽으로의 복귀를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1991년 12월 EC와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서구와의 관계강화 기반을 조성했고, 1998년 11월부터 EU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어 금년 5월 1일 EU 정회원국이 됨.
-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이후 안보 공백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1993년 NATO와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99년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친 서구정책과 병행하여 역사적으로 상호불신과 구원관계에 있던 CIS 및 독일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U 가입과는 별도로 주변국인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와 4개국으로 구성된 Visegrad 협력체제를 구축했고 중구자유무역협정(CEFTA)을 체결하여 상호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노력중임.
- G7 국가에 한국·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중국·홍콩·인도·말레이시아·멕시코·폴란드·러시아·싱가포르·남아공화국·태국·인도네시아 등 15개국 이 모인 그룹인 G22에 중·동유럽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는 정치·외교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1994년 바웬사 대통령의 방한과 1996년 이수성 국무총리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력관계로 진입하였고, 2002년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차원 높은 실질협력 관계로 발전하였음.
-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 북한 핵문제 등을 포함,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전폭 지지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국가임.

나. 사회동향

□ 의회정치를 통한 민주적 정권교체로 사회적 안정성은 높은 편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복지 혜택의 축소,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 구조조정, 20%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님.
- 오히려 최근의 강력한 성장기조 유지와 EU 가입에 따라 유럽의 일원이라는 국민의 심리적 기대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개혁에 따른 변화에 점차 순응해 갈 것으로 보임.
- 또한, 인구의 99%가 폴란드인이고 95%가 카톨릭 신자라는 높은 사회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 인종간, 종교간 분쟁 가능성도 거의 없음.

### Ⅲ. 주요산업

#### 1. 농 업

□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 2003년 현재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나, 총고용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임.
- 자영농의 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으나, 영세하여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으며, 농기계, 화학비료, 복합사료 등의 부족도 농업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됨.
- 농지면적은 15만km<sup>2</sup>로 전체 국토면적의 48%를 차지하며, 동부 유럽에서는 러시아연방에 다음 가는 농업대국임.
- 주요 농축산물은 라이보리, 밀, 보리, 귀리, 감자 및 소, 돼지, 말 등임. 특히 라이보리와 감자의 생산량이 많은데, 라이보리는 식량 외에 보드카 양조 등에 쓰이며, 감자는 식량·사료·공업용 원료 등으로 쓰임.

□ EU 가입으로 인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증가 전망

- EU에 가입함에 따라 폴란드의 농업부문은 4.5억 명에 달하는 소비시장을 확보하게 됨.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공동농업정책(CAP)의 소득안정조치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농촌개발조치의 확대에 따라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년 10월 18일부터 폴란드 농민들은 직접 보상금(direct payment)을 최초로 수령하기 시작하였음. 최초 신청자 5,100명에게 2,100만 주위티 상당의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2005년 1/4분기에는 약 140만 명의 농지 소유자가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번 직접 보상금 수혜 금액은 13억 5,800만 유로로, 이중 8억 4,200만 유로가

EU로부터 재원이 공여되었음.

- 현재 폴란드 농업구조현대화청(Agency for Restructuring &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ARiMR)은 15만 건의 신청을 승인했으며, 12월 초에는 약 50만 명의 농장주(farmer)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지출에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소유 농지(farmland)의 규모를 근거로 지불하게 되는 개별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헥타르(hectare)당 503주위티로 책정되었으며, 지불 첫날의 최고 개별 교부금은 25,000주위티였음.
- 직접 보상금뿐 만 아니라 농촌개발기금과 EU 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의 농업현대화 지원자금과 수출 및 시장개입 구매 보조금 등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EU 지원기금을 고려하면, 폴란드 농업분야의 금년도 수령액은 116억 주위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규모는 현재까지 폴란드 농민이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 규모의 3배나 되며, 실제로 폴란드는 EU 가입 첫해에 25개 EU 회원국 중 공동농업정책(CAP)의 7번째 수혜국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 < 참고 >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의 변화

###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개관

- 공동체 출범 당시 식료품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던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국제농산물 시장에 식량안보를 내맡기기보다는 공동체 내의 농업생산증대를 통해 이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했음.
-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공동농업정책으로서, 국제가격보다 높은 역내 지지가격을 설정해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보장된 가격으로 무제한 공동체에서 사들이며,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판매할 때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농산물과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수입부과금을 매기는 구조였음.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농민은 보장된 가격 하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정부가 구매하고, 수입농산물은 싼 가격으로 역내 농산물과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였음.
- 이와 같은 공동농업정책은 농업 생산성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와 국내수요분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던 EU가 짧은 기간 내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식량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음.
- 과잉농산물은 수출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다른 나라로 수출됐고, 이렇게 수출된 농산물은 미국과 수많은 개발도상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들어감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했음.
- 한편, EU 내부적으로는 과잉농산물 구매와 수출보조금 지급은 1980년대 후반 농업정책 예산이 공동체 예산의 70%를 차지함으로써, 공동체 여타 산업분야와의 균형문제, 농업 비중이 적은 국가들은 공동체 예산에 기여하는 부담에 비해 혜택을 적게 받는 국가간 수혜불균형 등을 야기시키면서 공동체내 재정위기와 함께 회원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했음.
- EU 농업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재정위기는 UR 농업협상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됐고, 결국 EU는 UR협상을 계기로 농산물 과잉생산과 수출보조금 지급의 악순환을 초래한 국가개입을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음.



- 이러한 농정의 방향전환은 ① UR협상의 타결을 가져온 1992년 개혁, ② 2000년 새로운 WTO 농업협상의 시작을 앞두고 이루어진 1999년 Agenda 2000 개혁, 그리고 ③ DDA 농업협상 진행과 중·동유럽권 국가 가입을 고려한 2003년의 이른바 중간평가개혁, 이렇게 세 차례의 개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음.

#### □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 세 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 축소되었음. 가격지지를 위한 보조금은 70%가 삭감됐으며, 농업보조금은 농업생산과는 독립적으로 소득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게 됨. 또한, 80년대 후반 EU 농업재정의 1/4을 차지하던 수출보조금도 9%대로 줄어들었음.
- 농산물의 양적 공급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식품안전·품질제고·환경보호 같은 요건을 강조함에 따라 EU 농민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
-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농업·농촌의 국토관리 기능 지원을 통한 환경과 지역의 발전 도모,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촉진시켜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중요성을 점점 더 크게 인정하고 있음.

#### □ 공동농업정책이 신규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국가들의 EU 가입에 따라 농업부문은 혜택을 받게 되며, 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은 확대된 역내 시장을 통하여 4.5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를 확보하게 됨.
- 그러나 EU의 농업인구는 과거 700만 명에 신규 가입국 농업인구 400만이 추가되어 약 1,1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경지면적 또한 1억 4,000만 헥타르에서 3,800만 헥타르가 증가함.
- 다만, 신규 가입국의 농업생산성이 낮아 생산액면에서는 약 6%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생산 잠재력이 높아져 향후 농업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5개국간 역내 관세가 없어지고 수출 쿼터가 소멸되면서 이제 EU 농업은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함.

- 그러나 신규 가입국 농민들은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CAP의 소득안정조치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임. 새로운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하여 나타날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신규 가입국들은 기존 EU 회원국에 적용된 조건보다 더욱 유리하고, 각국의 상황에 적절한 일괄적인 농촌개발조치(rural development package)를 시행하게 됨. 신규 가입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가용 예산 총액은 2004~06년 동안 51억 유로에 달하며, 직접보조(direct aid)는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둘째, 이들 국가들은 2004년까지 EU 총 배정액(full EU rate)의 25%를 수령할 것이며, 2005년에 30%, 2006년에 35%로 증액될 것임. 이 수치는 2004년에 30~55%, 2005년에 60%, 2006년에 65%까지 증액(topped up)될 수 있으며, 2006년까지 증액된 지원금(top-up payment)은 신규 가입국의 농촌개발기금(rural development fund)에서 EU 수준의 40%까지 공동 지원될(co-financed) 수 있음.
- 셋째, 증액지원(top-up)을 위해 사용된 EU 농촌개발기금은 20%(혹은 2004년 25%, 2005년 20%, 2006년 15%)를 초과할 수 없음. 2007년부터는 신규 가입국들이 해당 연도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수준(applicable phasing-in level) 이상인 30%까지 EU 직접지불을 계속 증액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라야 함.

## 2. IT 산업

### □ 2005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 전망

- EU 가입과 경제성장 호조로 폴란드의 IT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2003년 폴란드 IT 시장의 규모는 약 36억 달러였으며, 2005년에는 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1 >

IT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2003	2004	2005
시 장 규 모	36	41	46
성 장 륜	11.5	15.1	12.1

자료 : PMR

- 전체 IT 지출 중 하드웨어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IT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990년대 후반 만 해도 전체 IT 지출의 60% 이상이 컴퓨터 장비 부문으로 들어갔으나, 현재 이 비중은 44%로 하락했음.
- 한편, EITO (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에 따르면, 폴란드 IT 시장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7.7% 성장하여 중·동구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통신 인프라 개선

- 1989년 이후 통신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유선통신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도 1998년에 민영화된 국영통신회사였던 Telekomunikacja

Polska (TPSA)가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2002년 기준으로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수는 1,190만 명이며, 이중 90%를 TPSA가 차지하고 있음.
-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2003년 중 폴란드의 3대 이동통신 업체는 35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동전화 사용자 수가 2002년 말 1,390만 명에서 2003년말에는 1,74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동통신 시장의 규모는 57억 2천만 유로로 추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폴란드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2002년말 36.3%에서 2003년말 45.5%로 상승했음.
- 무선통신서비스시장은 폴란드 이동 통신 시장 1위 업체인 Polska Telefonii Cyfrowa(PTC)사의 ERA GSM(620만 명), Polkomtel사의 Plus GSM(520만 명) 그리고 폴란드 국영통신회사 TPSA의 자회사인 PTK Centertel의 Idea Centertel(570만 명) 3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음.

□ 인터넷 사용인구는 약 760만 명

- 2001년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는 약 760만 명이며, 2000년-2001년 사이에 270만 명이 증가함.
- 전체 인구의 18.1%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PC 보급률은 인구 100명 당 7.7대임.
- 인터넷 접속방법은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과 케이블 TV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3. 자동차 산업

□ 1990년대 후반 자동차 산업 급속 성장

- 폴란드의 승용차 생산대수는 1994년 33만 8,000대에서 1999년에는 64만, 7,000대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1~02년에 자동차 생산대수가 급감하여 2002년에는 28만 8,0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이후 자동차 생산대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SO 생산공장의 회생 여부에 따라 향후 자동차 산업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됨.
- 유럽시장을 겨냥한 자동차 생산법인 유치경쟁이 인접국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2002년에 토요다는 폴란드 대신 체코를 신규 생산법인 투자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04년 초 현대도 새로운 유럽 생산법인을 폴란드가 아닌 슬로바키아로 결정한 바 있음.

□ EU 가입 이후 중고차 수입 증대로 신차 판매실적 부진

- EU가입 이래 중고 자동차 수입이 폭증한 반면, 신차 판매 실적은 지난 7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어 폴란드 자동차 산업이 위기감에 휩싸여 있음. 중고 차량의 수입 폭증으로 인해 향후 자동차 산업의 전망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자동차시장 조사기관인 Samar에 의하면, 8월의 신차 판매는 7월 대비 8% 하락한 2만 288대에 불과해 금년 최악의 월간 판매 기록으로 집계됐으며, 하반기 이후에도 판매 개선의 기미가 없어, 2004년의 판매는 2003년 대비 5~10% 감소할 것이며, 2005년에 대한 전망 역시 어두운 것으로 전망함.

□ EU 가입 이후 중고차 수입 20배 가까이 증가

- EU 가입 이후 폴란드의 중고차량 수입은 거의 20배로 폭증한 반면, 사이프러스, 헝가리, 체크 등은 13%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폴란드에서 자동차 소유가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관계로, 차령이 15년이 넘었을 지라도 유명한 서구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임.

- 또한, EU 가입으로 인해 신차의 경우 기업의 일부 영업용 차량에 대한 부가세 (22%) 공제가 5월 이후 사라졌으며, 그간 서유럽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던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 FSO의 회생 여부 불투명

- 과거 대우자동차의 현지 생산업체였던 FSO가 회생할 수 있을 것이냐가 폴란드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 FSO가 파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해외 자동차 업체의 투자를 끌어 들이는 것이며, 현재 FSO 인수 가능성이 높은 해외 업체로는 우크라이나의 Awto ZAZ사와 중국의 Shanghai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 (SAIC)가 있음.
- 현재 FSO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90% 가까이가 우크라이나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며, ZAZ사는 폴란드 FSO 공장에서 신규 라노스 모델들을 조립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 SAIC사도 FSO에 투자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미 주요 주주인 중국 정부로부터 잠정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업체가 FSO 인수 협상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타 채권은행과의 부채 인수 협상이 남아 있으므로 FSO의 앞날은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임.
- 현재 대우자동차는 FSO 경영권을 넘겼고 주재원들도 모두 철수했으며, 단지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4. 철강 산업

#### □ 세계 철강 경기 호조로 폴란드 철강산업 전망 개선

- 폴란드 철강 산업은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점진적으로 현대화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철강경기의 호조로 향후 전망도 개선됨.
- 특히, 중국 경제의 철강 수요 급증으로 인해, 폴란드의 철강회사들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철강 생산량은 1980년대 말 2000만 톤에서 2003년에는 910만 톤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금년에는 2000년 수준인 1,05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도 철강 소비는 전년대비 6% 상승한 740만 톤이었으며, 철강 제품 수요 중 42%는 수입으로 충당하였음.
- 폴란드 최대 철강회사는 Ispat Polska Stal(IPS)으로 최근 철강경기 호조로 인해 금년 순이익은 연초 전망치의 2배인 10억 주워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철강기업 민영화 지속 추진

- 폴란드 정부는 체제전환 이후 철강산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철강 회사를 국고부(Ministry of Treasury) 산하의 기업으로 변환시켰으며,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5개의 철강 공장을 국립투자기금(National Investment Funds)에 편입시킨 바 있음.
- 나머지 철강공장의 대부분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소유주가 되어 지난 15년 동안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지만, 현재는 국고부가 여전히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폴란드의 EU 가입 교섭에 따라 폴란드 각료회의가 2002년에 EU의 결정 내용이 포함된 '철강 산업 구조조정 전략'을 결의했으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능력과 종업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정책을 수행해 왔음.
- 이에 따라 2002년에 Huta im.T. Sendzimir, Huta Katowice, Huta Florian, Huta Cedler 등 4개의 철강 공장이 신설된 Polskie Huty Stali(PHS)에 통합되면서 민영화는 가속화됐으며, 정부는 신설회사에 참여하는 기존 철강 공장의

부채 감소와, 용자에 대한 신용 보증을 통해 투자 지원을 약속했음.

- 2003년에는 인도-영국-네덜란드계 회사인 LNM이 폴란드 시장의 점유율이 70%인 PHS를 42억 주위티에 매입, Ispat Polska Stal(IPS)을 신설함.
- 최근에는 LNM이 Huty Stali를 인수하고, CMC Zawiercie는 미국기업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Huta Ostrowice에 스페인의 Celsa가 투자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폴란드 철강 공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 하고 있음. 이는 폴란드의 내수 시장이 크고, EU의 철강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5. EU 가입이 폴란드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가.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별 유형

- EU 규제 적용에 의해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식료품류
- VAT-통관제도의 변경에 따른 주변국 제품과 가격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주류, 원재료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제과류
- EU 가입에 따른 시장 확대, 서방시장 접근편리, EU 규제에의 흡수로 인한 수혜 등이 예상되는 운송, 관광
- 시장 확대의 장점을 누리는 것보다 경쟁심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영기업 성향이 강한 철도, 석탄, 화학 등

### 나. EU 가입에 따른 품목 또는 업종별 변화

#### 유제품

- 유제품산업은 시장통합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50% 이상의 공장은 이미



EU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나머지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

- Key Factor: 폴란드 국민이 1년간 소비하는 유제품의 양은 200리터, EU평균은 330리터임.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EU 규제의 도입 및 품질 차별화
  - 우유 제조공장의 수질, 작업장의 기준을 2006년말까지 충족필요
  - 우유의 위생기준은 2006년말까지 충족필요
  - 144개의 유제품공장에 대해서는 반년에서 2년 반 동안의 이행기간을 설정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우유가격 상승
  - 시장가격 안정화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EU 기준을 만족하는 품질의 우유공급 부족
  - 일부 유제품 공장의 도산

□ 육류

- 작업장은 EU 기준을 충족시키며, 공급 네트워크의 관리도 준비되었으나, EU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재편 필요
  
- Key Factor: 폴란드의 육가공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5%임.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도살장, 작업장의 EU 위생기준 적용
  - 다른 마킹제도(EU 기준적합품은 구형 인각을, 폴란드 내수 판매만을 위한 것은 사각 인각을 도입)
  - EU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소규모업자의 육류는 지역시장에만 유통(직접 판매의 증가)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저가의 폴란드 육류는 EU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
  - EU 시장에서 자연식품 선호 열기로 폴란드 산 육류의 수요확대 가능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E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공 공장의 폐쇄
  - 도소매 네트워크에 대한 생산자 교섭지위 약화
  - 업계의 선전, 광고, 마케팅을 위한 예산 부족
  - 지하경제의 형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도살과 육류유통)

## □ 어업

- 가입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으며 어선폐기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 예상되고 있음.
- Key Factor: 어선폐기, 어항인프라 정비, 가공 공장 현대화를 위한 EU로부터 지원금 3억 3,100만 유로 수령 예정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어업자에 대한 변화: 어장의 EU 어선 개방, 선박의 폐기, 수확제한 감소, EU 시장 경쟁에 노출
  - 가공 공장에 대한 변화: 이행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가공 공장은 현대화가 필요하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부터의 어류는 올림픽방식(자유경쟁이지만 관계어업자의 어획량을 확인해 제한량에 도달할 경우 어획을 금지하는 방식)의 이행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구조조정 및 현대화
  - 건전한 시장의 구축(판매시스템, 경매시스템)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EU로부터의 자금지원 지체
  - 일차판매자에 의해 국내어업자가 퇴출당할 가능성

- 일부 가공장의 폐쇄

## □ 양조

- 양조업은 EU 가입에 자발적으로 대비하여 왔으며 중소기업들도 서방측 맥주와 품질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EU 가입에 따른 위협은 없음.
- Key Factor: 주변국으로부터 저가맥주 수입위협에 처한 국경지대 입지 맥주제조업자 수는 17개소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등 폴란드보다 저가의 물품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맥주와 경쟁심화
  - 세율차이에 따라 수출입을 검사하는 기업은 이익확보 가능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대규모 양조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싼 가격에 조달가능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국경에 접한 독인,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로부터 저가 수입 맥주 증가
  - 폴란드의 맥주에 대한 물품세가 낮아진다면 수천명의 고용상실과 10억 주위의 세수감소의 가능성

## □ 증류주

- 다수의 업자는 EU의 증류주 시장의 조사를 마친 상태임.
- Key Factor: 증류주업계는 증류주에 대한 물품세의 30% 인하를 요구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마케팅 및 광고비용의 증가
  - HACCP(식품류 품질관리)시스템의 도입
  - 보조금을 통해 재배된 감자 및 곡물로부터 추출된 저가의 알콜 사용 가능

- EU 역내에서의 증류주 운송 제한 기준의 완화
-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 폐지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역내관세폐지, 폴란드산 보드카 판매증가
- 기존 증류소가 아닌 직접 EU 역내의 판매점에 판매가능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수입에 따른 관세의 철폐(외국산과 경쟁)
- 브라질, 파키스탄 산 저가 스피리트주 유입
- 증류기술 및 자금력이 강한 외국의 증류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

□ 제과

- EU 가입에 준비를 잘했으나 문제는 외국보다 높은 VAT세율(22%)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 Key Factor: 수출이 총매출의 70% 차지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사탕가격 상승, 사탕의 저장 제한
- 외국과 국경지역의 경쟁심화(VAT 차이에 기인)

- EU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EU 및 EU 지역외 국가에서 판매증가 가능성

- EU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원재료(사탕, 우유) 가격의 상승
- 폴란드와 주변국의 VAT 차이
- 사탕 저장 제한을 넘는 경우 벌칙적용
- 수출보조금 폐지 및 감소에 따른 제3국으로의 수출경쟁력 감소

□ 석탄

-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제경쟁에 대응하는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
- Key Factor: 운송 등 제비용 제외한 석탄 1톤당 생산비용은 32유로(독일, 서방 측은 130~140유로)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적자탄광은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는 2007년까지 폐쇄필요
  - 작업장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 도입
  - 폐기물 처리규제 성립에 따른 슬러그 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비용증가
  - 중노동에 대한 안전기준 도입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구조개혁에 따른 경쟁력 강화
  - 서방측에의 석탄수출 확대 가능성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수입자유화
  - 에너지에 대한 EU 공통세 도입과 환경관계의 규제에 따른 석탄을 사용하는 경우 고정비의 증가, 석탄수요 감소 가능성

## □ 건설

- 전반적으로 중요한 건설회사는 이미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Key Factor: 향후 몇 년간에 걸친 폴란드내 인프라정비를 위한 지출은 약 40%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건설자재에 대한 VAT 상승(7% → 22%)
  - 가옥의 신축, 개축, 수리서비스에 대한 VAT 상승(7% → 22%)
  - 최하 7년간의 노동력의 이동 제한
  - 국내시장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잠재적 경쟁심화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시장접근 용이
  - 인프라 정비, 환경관련 공사의 증가
  - 장기 프로젝트는 관민협조용자에 따라 자금 유치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VAT 세율의 상승으로 수요부진 우려
  - 폴란드 기업의 위험한 재무상황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 곤란
  - 서방측으로부터의 중소건설기업 유입
  - 경쟁이 심화되어 EU 시장에서 안정적 수주확보 곤란

#### □ 관광

- 자금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모션에의 비용절감과 표준화로 EU 가입에 대비했음.
- Key Factor: 2003년에 폴란드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독일 448만 명, 슬로바키아 31만 명, 체코 148만 명, 리투아니아 29만 명, 오스트리아 4만3천 명, 프랑스 3만1천 명임.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국외 여행서비스에 대해 22%세율 적용(현행 7%)
  - 국내 여행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7% 세율 유지
  - 국내 여행운임에 대한 0%세율 유지
  - 호텔서비스에 대한 7% 세율 유지
  - 청년 여행자에 대한 면세 철폐
  -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7%의 세율은 2007년 까지 적용 가능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외국인 여행자 수 증가, EU 회원국으로서 안전한 이미지 확보
  - 국경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EU 기준의 준수
- 구 CIS국가들로부터의 여행자 수 감소
- 중소기업체가 많아 경쟁으로 도산하는 업체 증가

#### □ 운송

- 국내 운송업계는 경쟁을 위해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EU 가입으로 폴란드 독자적인 영업허가는 불필요
- Key Factor: 2004년 5월 1일까지 폴란드 신청자에게 발행한 EU의 영업허가증 수는 11,000개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EU 역내 수송시장에의 자유로운 참가
  - 민영 허가증 발행수단 간소화
  - 기 가입국 및 신규 가입국은 3년간 카보타지(cabotage) 가능(국내운송을 자국의 배 및 차량에 한정하여 운송권 제한)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EU 시장 참가용이
  - 국경통과의 소멸에 의한 국제 운송수요 증대
  - 차량 등의 현대화
  - 국내시장 운송의 안정화와 표준화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국제 적하시장에서 발틱 국가들 같은 저가 조업자에 경쟁 뒤처짐
  - 일부지역 가입국에서 고속도로 운행료 추가징수
  - 자금력에 관해서는 서방업자가 유리

#### □ 철도

- EU 가입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예상됨.

- Key Factor: 민영철도 업자에 부과된 면허 수는 35개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구조조정과 민영화
- 여객 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
- 유럽횡단 철도망에 가입 제한(2007년부터 자유화)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현대화를 위한 EU자금 확보
- 동·서 운송망의 발전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독일계 물자운송회사(DB Cargo)와의 경쟁
- 비싼 철도 운송 인프라 사용료와 낙후된 국내 철도 인프라 상태

#### □ 제약

- 제약업계는 EU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 이미 10억 유로를 사용했고 2008년 말까지 이행기간을 통해 제 규제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

- Key Factor: 의약등록사무소에 등록된 의약품의 수는 3,000개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밴드, 붕대, 주사기는 2005년까지 시장에서 퇴출
- 2000년 이후에 등록된 의약관계 특허 제품의 5년간 제한(신규 가입국에서 등록하지 않고 기 가입국에 등록한 특허에 기초한 제품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등록절차의 간소화
- EU 시장 참여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계약에 해당하는 특허 보호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국내 제약기업은 의약품의 재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판매가 금지 될 가능성이 있음.

## □ 화학

- 부채상환 및 신규 투자에 대한 자금 부족, 민영화 및 통합에의 결단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 Key Factor: 2010년까지 화학산업계가 EU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채상환 및 설비투자에 약 110억 주위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구조조정, 민영화 가속
  - 시장 자유화
  - BAT의 도입(Best Available Technology, 산업이 도입하는 설비 및 시설과 관련하여 인가 시점에서 배출기준의 검사, 환경보전을 위해 도입하는 기술의 선택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EU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기초한 IPPC 기준을 제정해 대상시설 설치 시 인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 설비투자과 생산능력 증가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화학제품, 플라스틱의 무역적자 감소
  - 원재료 가격의 저하
  - 화학제품 수요 증가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구조조정의 강제 이행
  - 동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 실패
  -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도입
  - BAT제도 안에 환경정책 등의 포함으로 국제적인 경쟁심화

□ 담배

- 폴란드의 공장은 이미 서방측의 기술 및 경영기준에 부합하고 있음
- Key Factor: EU 예산안의 담배 세수는 650억 유로 상당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재정측면의 변화: 2008년까지 담배의 물품세를 1,000개당 64유로로 인상필요
  - 관세의 폐지
  - 경쟁심화
  - 담배 재배자에 대한 EU의 보조금 배분
  - 금연운동 및 정책 활성화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EU에의 수출증대
  - 대기업이 직접 조업하는 형태로 변화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물품세 상승
  - 다른 신규 가입국의 저가 제품과 경쟁 심화
  - EU 담배 정책에 동조 의무
  - 담배 재배자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는 흐름으로 갈 우려

□ 은행

- 은행업계는 EU 가입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나 외국은행과의 경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예금 준비금이 감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Key Factor: 매년 은행이 예금 준비금을 적립한 것에 대한 기회이자 이익은 약 17억 주위티 수준으로 추정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소매금융 분야의 서비스 향상

- 전자결제 보급
  - 경쟁 심화
  - 자산관리의식 향상
  - 국외송금 자유화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경쟁 심화는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
    - EU로부터 원조자금을 은행이 중개하여 자금 유동성 증가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금융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결여
    - 체제 도입의 가능성
    - 은행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증권발행 증가로 자본시장 확대 가능성

#### □ 보험

- 폴란드 시장의 프리미엄은 높지 않아서 서방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Key Factor: 1인당 프리미엄 금액은 폴란드 154유로, 헝가리 170유로, 체코 240유로, 포르투갈 803유로, 스페인 1,062유로, EU 15개국 평균 2,104유로임.
- EU 가입에 따른 변화
  - 보험 전반에 대한 신규 법칙 적용
  - 엄격한 자금운용정책에 기초한 펀드의 프리미엄 설정 차별화
  - 외국기업이 폴란드에서 영업면허를 얻는 것이 불필요
  - EU 내의 보험기업이 폴란드 국내지점을 설치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 차량의 TPL(Third Party Liability)가 전체 EU 가입국에 적용
- EU 가입에 따른 긍정요인
  - 고객의 보험사 선택 다양화
  - 고객서비스 향상 및 매력적인 상품의 등장

- EU 가입에 따른 위협요인
  - 외국기업의 참가에 따른 경쟁 심화

## IV. 외국인투자 환경

### 1. 외국인투자 정책

#### 가. 개요

##### □ 중·동유럽 최대의 시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 동·서유럽과 구소 연방을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여 EU 진출기지로 유망하며, 국토 면적과 인구에서도 중·동유럽 국가 중 최대임.
- 석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저렴한 숙련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체제전환 초기부터 서유럽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
- 2004년 EU 가입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크게 작용하여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음.

##### □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영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일찍부터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2000년 4월부터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주위티화의 태환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외환제도를 운영중임.

#### 나.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

##### (1) 개요

- EU 가입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내·외국인 동등대우정책 확립을 위해 그동안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부여해 오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중임.
- 부분적으로 R&D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고용확대를 위해 일부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별경제지역 지정 등 제한적 인센티브제도만 시행하고 있음.

## (2) 산업별 인센티브

- 정부가 권장하는 업종 및 기업활동에 대해 낮은 세율, 세금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폴란드 외국인투자청(PAIZ)이 관련 인센티브 정보를 제공
  - 특정 생산품목에 대해 부가세 면제 또는 낮은 세율 적용
    - 재무부가 부가세율 결정(해당기업의 별도 신청은 불필요)
  - 공익적 사회단체, 사회복지 증진, 문화활동 등과 관련된 기업활동에 대해 세금감면
    -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세금감면
    - 교재, 학술서적 발간 시 매출액의 5% 세금감면

## (3) 지역별 인센티브

- 1995년 이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 설치운영
  - 6개 대규모 SEZ 및 9개 소규모 SEZ 설치(20년간 운영 예정)
  - SEZ는 실업문제 해결에 다소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EU는 시장왜곡 및 경쟁저해 이유를 들어 동 제도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경제부는 EU 가입 이후에도 기존 SEZ 투자기업의 기득권(투자 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비용의 50%까지 소득공제 등)은 보호할 예정임.

□ 2001년 이후 SEZ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 지원조건: SEZ에서 10만 유로 이상의 투자, 또는 5년간 사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
- 총투자액의 50%(중소기업은 65%, 크라크프 테크놀로지 파크는 대기업 40%, 중소기업 55%)까지 법인세 감면
- 지방자치체에 의한 부동산세 면제(지자체에 따름)
- 직업훈련에 관한 보조금 지급
- 고용창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

□ 2000년 말까지 SEZ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 EU 가입 교섭시 쟁점이 되었던 2000년 말까지 SEZ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는 EU 가입 후에도 조건부로 인정됨.
- 최초 투자 이후 10년 간 법인세 100% 면제, 그 후 10년간은 법인세 50% 면제 혜택
- 중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은 2011년 말, 중기업은 2010년 말까지 현행의 우대조치를 적용함.
- 대기업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진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투자총액의 75%, 2000년에 진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투자총액의 50%를 상한으로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기업 중 자동차관련 기업은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음. 공적지원의 개시일은 2001년 1월 1일이고, 그 이전에 부여했던 부분은 고려하지 않음.

□ 6대 대규모 SEZ

- Katowice Zone: 1996년 설치(827ha)
  - 투자액 2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10년 간 법인세 전액 면제, 투자액 2백만 유로 미만인 기업은 고용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 부여
  - 자동차(Opel사), 건설, 의류, 화학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발
  
- Mielec Zone: 1995년 설치(570ha)
  - 10년 간 법인세 전액 면제
  - 동부에 위치하여 외국인기업보다 내국기업 유치가 활발함.
  
- Legnica Zone: 1997년 설치(381ha)
  - 투자액 85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10년 간 법인세 전액 면제, 잔여기간 법인세 50% 감면
  - 투자액 85만 유로 미만인 기업은 투자액과 고용실적에 따라 세제혜택 부여
  
- Walbrzych Zone: 1997년 설치(256ha)
  - 투자액 5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10년 간 법인세 전액 면제, 잔여기간 법인세 50% 감면
  - 투자액 5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은 투자액과 고용실적에 따라 세제혜택 부여
  
- Lodz Zone: 1997년 설치(205ha)
  - 투자액 2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10년 간 법인세 전액 면제, 잔여기간 법인세 50% 감면
  - 투자액 2백만 유로 미만인 기업은 투자액과 고용실적에 따라 세제혜택 부여
  
- Suwalki Zone: 1996년 설치(432ha)
  - 투자액 35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10년 간(2011년까지) 법인세 전액 면제
  - 1998년 이후 신규허가 중단

(4) 지방 정부 차원 인센티브



- 지방세(부동산세, 차량세) 면제
- 도로, 통신, 상·하수도,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시 자체 지원

#### (5) 수출 인센티브

- 모든 수출품(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제
-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 가능

### 다. 외국인투자 절차

#### (1) 투자승인

##### □ 내국인의 기업 설립절차와 대동소이함

-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수속·필요서류: 정관 작성, 설립자본금 전액 납부, 법인 이사회구성원의 선임, 설립등기
- 기업설립 시 공증계약서 작성 및 상업등기부 등재 필요(대도시 3~4주, 지방소도시는 3일정도 소요)
- 기업설립에 요구되는 제반 인허가 사항은 등기부 등재 전 완결되어야 함.

##### □ 외국인투자

-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 외국에 거주지를 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외국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 등
- 외국인투자 금액: 제한이 없으며 외국자본만으로도 기업설립이 가능함.
- 유한회사는 1인 책임사원으로 가능

- 현물출자: 허용됨. 단, 외국인 투자자는 재무부의 허가가 필요함.

□ 경제활동법: 2001년 1월 기존 법령(1988년 법령)을 대체하여 발효되어 폴란드 내의 각종사업 목적의 활동을 포괄하는 법령으로, 2004년 9월 3일 발효된 상거래자유법(Freedom of Business Act)으로 대체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

- 소기업: 종업원 50인 미만, 연 매출액 7백만 유로 미만 기업 또는 총자산 500만 유로 이하 기업
- 중기업: 종업원 50~250인, 연 매출액 40백만 유로 이하 기업 또는 총자산이 2,700만 유로 이하의 기업
- 중기업, 소기업 모두 주식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다른 사람이 보유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함.

- EU 규정에 맞추어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 확립(동 법에 따라 외국인은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지점 설립이 가능해 졌음.)

-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영역을 종전 30여 개에서 6개 분야로 대폭 축소

- 허가대상 분야 : 광업(광물자원의 심사와 식별, 채굴, 폐기물 처리), 폭발물 및 무기류 생산 및 거래, 액체연료 분야(연료와 에너지의 제조·가공·보관·수송·배급·거래), 보안서비스(탐정·경비회사 등), 항공수송 및 기타 항공서비스, 도로건설 및 운영, 철도수송 및 철도선로의 경영,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
- 특별허가 요구 분야: 통신서비스

□ 2001년 개정 상법 발효(1934년 상법 대체)

- 최소 설립자본금: 500주위티에서 50,000주위티로 인상(주식회사는 500,000주위티)

- 각 유한책임사원은 각자의 결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
- 유한책임회사(Sp z o. o.)에서 주식회사(SA)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함.
- M&A 절차에 새로운 요건 도입.

□ 기타규제

- 자본 참가에 대한 제한
  - 라디오 · 텔레비전 부문: 33%까지
  - 어업: 49%까지

(2) 기존 기업 M&A

- 폴란드는 1999년부터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시장 지위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M&A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등 M&A 관련 공시제도를 EU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
- 경쟁 · 소비자 보호국(UOKiK, 이전 반독점국)은 M&A 관련 규정을 총괄
- 기존기업 지분의 5% 이상 취득 시: UOKiK, 증권위원회(KPW) 및 일반인에게 계약내용을 고시해야 함.
- 지분취득으로 독점기업 탄생이 우려될 경우: UOKiK가 M&A 거래에 개입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M&A 결과를 UOKiK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결합기업의 매출총액이 25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
  - 결합기업의 자산총액이 5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
  - 결합기업의 이사, 감사 지명자가 경쟁기업 관계자인 경우

- KPW는 취득기업에 대한 인수가격이 부적절하게 결정되어, 국가이익을 침해하였거나 반독점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UOKiK의 의견을 청취하여 M&A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음.

(3) 사업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관련 허가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건축, 토지구입, 용수사용, 공해유발 등은 대부분 유관기관(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함.
- 특별경제구역 또는 낙후된 지역 외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제반 절차상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4) 환경관련 규제

- 관련법규: 환경보호법(1980), 정부감시법(1991), 수자원관리법(1974) 등에 의거 규제함.
- 환경규제는 EU의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동구권에서 처음으로 EU와 협의 하에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임.
- 전반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5) 부동산 취득

- 관련법: 외국인 토지취득법(1920), 외국인기업법, 토지 관리 및 수용법 등
- EU 규정에 맞추어 토지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1996년 외국인 토지 취득제한을 완화(외국인 토지취득법 개정): 내무부 허가 면제사항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폴란드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고,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외국인기업이 영업목적 상 취득한 토지(농촌지역 : 10천m<sup>2</sup> 이내, 도시지역: 4천m<sup>2</sup> 이내)
  -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
  - 상기 사항 외 외국인의 토지취득: 내무·행정부의 허가 필요
- 1994년 유럽협정: 폴란드와 EU 회원국은 상호 동등한 대우 보장(EU 회원국 기업 및 개인은 사업목적의 부동산 취득 시 내무부 허가 불필요)

#### (6) 기업설립

- 기업설립 자격: 내국인(폴란드 거주중 보유자로 시민권 보유 여부와는 무관), 외국인, 법인, 경제단체 등
- 외국인 참여기업의 법적 형태
  - 주식회사(SA): 주식상장 시 적합한 기업형태
  - 유한책임회사(Sp z o. o.):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주주의결 불필요, 설립절차 간편
  - 개정 상법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외에 다양한 회사형태를 인정하였음.

<표 IV-1>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조건 비교

	주식회사(SA)	유한책임회사(Sp z o. o.)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자본금 500,000주워티 이상</li> <li>• 등록전 25% 이상 납입</li> <li>• 등록시 자본금의 5%를 지방법원에 등록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li> <li>• 현물출자시 등록된 감사인이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자본금 50,000주워티 이상</li> <li>• 현물출자는 유한책임사원이 평가</li> </ul>
법정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의 1/3이 될 때까지 매년 당기 순이익의 8% 적립</li> </ul>	없음
발기인 (설립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1인 이상, 국적 제한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숫자, 국적의 제한 없음</li> </ul>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5인 이상</li> <li>• 임기: 3년이내(설립시 임기: 1년)</li> <li>• 국적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자본금 250백만 주워티 이상이고 설립주주 50인 이상: 최소 3인 이상</li> <li>• 국적제한 없음</li> <li>• 이사회 구성원은 1인 이상으로 정관에서 정함. 이사와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음.</li> </ul>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및 지방 세무소 제출</li> </ul>	좌동
주권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액면가액: 1주워티</li> <li>• 무의결권 또는 무배당 주식 허용안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액면가액: 500주워티</li> </ul>
설립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비용, 인지세, 법원수속비용 등</li> <li>•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50,000주워티를 초과하지 않음</li> </ul>	좌동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 공정 거래 위원회 신고: 연간 매출액이 2,500만 유로가 넘는 회사가 폴란드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인수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소요기간 2개월, 비용 없음)

- 회사 정관 작성 및 공증(공증 검토기간 4주)
- 법원 등록
- REGON번호(사업자 통계 신고 번호) 취득: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소요기간 2일, 비용 없음)
- 경제부 신고
- 은행 계좌 개설(소요기간 1주 정도, 비용 없음)
- 납세 번호 취득(소요 기간 3주 정도)

## (7) 지점, 사무소 설치

경제활동법에 따라 외국인인 상업을 등기부 등재만으로 완전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지점 설립이 가능함.

- 지점은 경제부 등록만으로 모든 경제활동(판매, 마케팅 등)이 가능함(종전에는 사무소를 통해서만 광고 및 판촉 활동이 가능했으며, 판매활동은 폴란드 내 별도의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했음).
- 단, 지점은 본사 영업범위 내의 활동만 가능함.

## 2. 외국인투자 여건

### 가. 무역 및 관세제도

#### (1) 개요

- 폴란드 정부는 수출산업 성장에 주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재에서 제조업으로 수출촉진 분야가 변하고 있음.
- EU 지역은 폴란드의 주력 수출시장(총수출의 1/3을 차지하는 독일을 비롯하여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며,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유럽지역에서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만성적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폴란드는 1994년부터 EU의 준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EU와는 섬유, 철강, 연료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무역장벽을 제거시켜 왔으며, 2004년 EU 정회원 가입과 함께 EU 공동대외관세(CET)<sup>2)</sup>에 따르고 있음.

- 1993년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를 결성하여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등과 무역장벽을 낮추어 왔음
- 1998년 발효된 관세법은 EU 기준에 맞추어 제정되었으며, 대개 통관절차와 서류작성을 간소화시키고 있음.

## (2) 수입관세

- EU 가입에 따라 EU권외에서 수입할 때는 CET가 적용됨. 또한 EU권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 및 통관처리가 철폐됨. 이에 따라 EU권외에서의 재화 거래에 관해서는 Intrastat라는 명칭의 새로운 보고자료를 매월 Customs Office에 제공할 의무가 부여됨.

- 관세가 인하되는 주요 품목

- 텔레비전 수상기 부분품: 8% → 3%
- 휴대용 무선전화기: 9% → 무관세
- 선박추진용 엔진: 6% → 0 ~ 2.7%
- 염색한 제품: 9% → 7.2% 등

- 관세가 인상되는 주요 품목

- 자동차용 기타 부속품: 무관세 → 3.5 ~ 4.5%
- 불꽃 점화식 세단형 차량: 무관세 → 10%
- 압축점화식 5톤 이하 일반화물 자동차: 무관세 → 3.5%

2) EU의 평균 관세율은 6.3%(공산품은 3.6%)로 폴란드와 EU 평균 관세율 격차는 8.8% 정도임. 공동관세의 채택에 따라 EU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간 상품의 이동이 한결 자유로워 짐.



- 압축점화식 1500 ~ 2500cc 지프형 차량: 무관세 → 10% 등

- 관세법에 따라 외국인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반입하는 기계, 장비류, 기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1997년 1월 9일 시행, 관세법 제190조 34항). 단, 3년 이내에 양도나 매각을 해서는 안 됨.

- 수출용 생산에 수입자재·반제품 등을 사용한 경우, 수입할 때 징수된 세는 환급됨(1997년 1월 9일 시행, 관세법 제121조).

- WTO의 권고에 따라 관세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관세율 : 0~45%(주류,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율 부과 가능)

- WTO 회원국, 최혜국 지위국에 대한 관세율: 낮은 관세율 적용

- EU가 개도국에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PS)를 도입함. 대상품목은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비민간품목 192개군, 관세를 3.5% 포인트 인하(일부 종가품목은 20%, 종량품목은 30% 인하)해 주는 민감품목 174개군이 지정돼 있음.

- 최혜국: EU, EFTA, CEFTA,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터키, 페로제도, 일부 저개발국가

### (3) 수입제한

□ 특정 수입품목은 경제부의 수입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함.

- 대상품목: 포도주, 맥주, 천연가스, 낙농제품, 무기류, 폭발물, 방사성물질, 군·경 장비류, 의료기기, 석유류, 주류, 담배, 석탄, 일부 농업제품, 동물성 젤라틴, 합성섬유, 중고의류, 실내유희용품 등

### (4) 수출관세: 없음

### (5) 자유무역지대

- 폴란드는 관세상 외국으로 간주되는 보세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개소의 보세지역을 운영중임. 그러나 통일된 법규체제의 미비, 세무당국과 세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미비 등으로 바르샤바 Okęcie 공항 및 Gliwice 를 제외한 나머지 보세지역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보세지역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 쿼타, 수입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나. 외환 및 금융제도

### (1) 외환제도

#### □ 외환통제

- 중앙은행이 재무부와 협의하여 외환정책을 행함. 재무부는 외환 전반을 감독·관리하고, 중앙은행 총재와 협의한 후 외화 허가를 내줌.
- 폴란드 외환법규는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정에 맞추어 정비되고 있음.
- 2000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zloty화의 완전 태환성을 논의했으나, 외환시장의 불안을 염려하여 다음의 일부 거래에 대해 중앙은행(NBP)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 대규모 현물환거래
  - 거주자간 대규모 외환거래
  - 만기 1년 미만의 대규모 외화차입(1백만 달러 이상) 거래
- 외환법(1994년)은 폴란드 주위티화의 태환성을 고려하여 제정되어, 주위티화로 수출입 결제가 가능함. 1999년 외환법 개정으로 기업의 영업용,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단기자본거래 등의 목적으로 주위티화의 태환이 가능하게 되었음.

- 단, 대규모 지분취득은 증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또한, 외환제도 안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부거래에 있어 외환의 무이자 강제예치가 가능토록 하였음.
-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
  - 폴란드 기업은 10만 달러 이하의 거래(1년 이내, 외환비용지급 목적인 경우)실행을 위해 해외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또한 외환거래 면허 없이 1백만 유로까지 OECD 국가 및 폴란드와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자산,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음.
  - 폴란드 기업들은 별도의 허가 없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차입 또는 해외로 자금을 공여할 수 있음.
  - 개인들은 별도의 허가 없이 1만 유로까지 해외로 반출하거나, 5만 유로까지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음.
  - 외국인기업의 폴란드 자회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차입이 가능하며, 차입금의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간주됨.

□ 투자자금 유입 및 송금

- 출자비율: 100% 외자 출자 가능
- 지분취득을 위해 유입되는 자본은 기업설립 시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철회 및 본국송금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음. 또한 이익의 재투자는 아무 제약 없이 가능함.
- 이익의 해외송금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음.
- 1996년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모든 자본 유출입에 관한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1997년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규제도 철폐되어 내국인도 국제자본시

장에서 증권취득이 가능해 졌음.

□ 차관유입 및 상황

- 해외차입의 경우 만기 1년 이상인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함.
- 폴란드 기업이 상거래 계약 이행을 위한 해외차입이 허용되며, 외국에 투자한 폴란드 기업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공여할 수 있음.
- 외국인이 투자한 폴란드 기업은 외국주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해외차입의 조건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차입금 상환에도 제한이 없음.

(2) 금융제도

□ 개 요

- 폴란드의 성숙되지 못한 금융 및 자본시장 상황으로 장기자금은 주로 해외에서 공급됨.
- 소비자신용, 주택금융을 위한 단기자금은 국내시장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공급됨.
- 1998년부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영업이 허용된 이후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차입보다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채권발행 등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지속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음.
- 1992년 은행법이 제정되어 1개 기업 여신한도를 자기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금융산업 현대화 및 EU 체제 접근을 목적으로 1997년 신은행법이 제정됨

- 은행신설: 비금융기관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법인 또는 자연인 필요
- 은행 신설 인허가: 금융감독위원회(재무부와의 협의하)
- 외국은행 지점 및 사무소 개설 인허가: 재무부
- 최소자본금: 5백만 유로 이상(주위티화로 납입되어야 하며, 현물출자는 납입자본의 15% 이내에서 허용되나 이 경우도 현금납입액은 5백만 유로 이상이어야 함.)

#### □ 단기금융

- 단기금융관련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부문의 효율성 및 경쟁력은 취약한 편임.
-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은 소매 및 기업금융, 저축예금, 환어음 인수 및 할인, 기타 다양한 여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자금부족으로 충분한 여신공여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음. 또한 이자율 수준도 높은 편임.
- 기업간 단기차입이 기업금융의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1992년 폴란드 개발은행이 최초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였음. 해외 모기업들은 폴란드내 자회사의 기업어음 발행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폴란드 국영 상업은행들(Bank Handlowy, Bank Pekao, 수출개발은행 등) 과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거래를 취급하고 있음.

#### □ 중장기금융

- 폴란드 금융기관들은 주로 단기금융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장기금융은 활발히 취급되지 못하고 있음.
- 폴란드개발은행이 가장 중요한 중장기 개발금융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주로 에너지 개발, 환경보존과 관련된 분야의 자금공급).

- 폴란드투자은행도 산업용 중장기자금을 공급함.
- 외국계 은행들과 국제기구들(EBRD, IFC 등)이 중요한 중장기 자금공급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밖에 각국 정부들이 폴란드에 진출한 자국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대기업들은 채권발행을 통해 중장기자금을 조달함.
- 바르샤바 증권시장은 1991년 재개설되어 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의 역할을 수행함.

## 다. 조세제도

### (1) 법인세

#### □ 개요

- 폴란드 조세는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법인부담조세: 법인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 외에 부동산, 차량, 피고용자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조세부담이 큰 편임.
- 1994년 내·외국인기업에 법인세 감면제도를 실시
- EU 체제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조세제도 정비가 계속 진행중임.
  - 1993년 부가세 도입
  - 1994년 회계기준법 제정: EU 회계제도에 맞춘 회계관행 정착 추진
  - 1997년 조세감시법: 조세당국의 감시권한 확대

- 대기업들의 조세도덕성(tax morality)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들은 조세회피 관행이 만연해 있음.

#### □ 법인세율

- 법인세율: 1996년 40%에서 매년 2%씩 낮추어 2004년 19%까지 인하하였음 (2003년도는 27%였음).
- 투자충당금 설정한도, 내·외국인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적 조세경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농업분야는 경지면적에 따라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부과는 없음.

#### □ 과세대상 소득

-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법인: 법인의 전체소득에서 비과세이익항목(일부 자본이득, 원천징수후의 해외배당금 등), 손실, 차감대상 배용 등을 차감한 이익
-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 폴란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비과세이익항목, 손실, 차감대상 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
- 1999년 도입된 최소자본화(thin capitalization)법은 주주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일부를 차감대상 비용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대상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경우
  - 자본금의 300%를 초과하는 주주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
- 차감대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벌과금 및 위약금, 투자액, 채무상환액, 법정한도(통상 총소득의 15%이내)를 초과하는 광고비 및 기부금, 자발적 충당금, 기타 비과세소득을 위한 발생비용 등
- 손실: 1999년부터 매 회계연도 손실의 50% 이내에서 5년간 이연처리가 가

능하며 손실의 소급은 불가함(1998년까지는 3년간 이연처리).

- 투자충당금: 과세대상 소득의 30%(투자장려분야) 또는 과세대상소득의 10%(일반투자분야)이내에서 충당금 설정을 허용하되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 투자충당금은 허용하지 않음.
- 배당: 과세대상소득 차감대상은 비용항목이 아님.
- 감가상각비: 차감대상 비용 항목임.
- 사회보장세, 로얄티 :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에서 부과된 조세는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
- 자본이득세: 정상소득에 포함

#### □ 감가상각

- 정액법이 원칙이나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상각법 적용이 가능함.
- 자산별 상각률(재무부가 결정): 연간 상각률 2.5%(건물)~30%(컴퓨터)
- 세법상 일반적 내용연수: 건물(40년), 기계장치(5~14년), 컴퓨터(3 $\frac{1}{3}$ 년), 자동차·휴대전화(5년)
- 물가를 감안한 자산재평가 허용 안됨.
- 2,500주워티 이하인 자산은 취득시점에서 전액상각 또는 임의의 상각률 적용이 가능함.

#### □ 기타조세

- 자본세: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자산은 자본세 부과대상이 아님. 지방



세법(1991)에 의거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됨. 세법에는 제한세율만 결정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체가 실제 세율을 결정함.

- 제한세율: 사업용 토지(PLN 0.62/m<sup>2</sup>), 사업용 건물(PLN 17.31/m<sup>2</sup>)
- 협동농장, 국영농장, 개인농장 등은 생산물, 생산방법 등에 따라 농업세가 부과됨.

- 배당세

- 배당세율: 별도의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해외 모기업에 대한 배당에 대해 배당세 원천징수. 내·외국인기업으로부터 내국인, 내국기업에 대한 배당도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9%(2004년 1월에 15%에서 19%로 인상)

- 이자소득세

- 별도의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 해외로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20%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내국기업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으며 내국인의 정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 로열티, 수수료에 대한 과세: 별도의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 해외로 지급되는 로열티 및 수수료에 대해 20%의 소득세 원천징수

- 부가세: 1993년 도입. VAT 등록회사는 구입 시 지불한 VAT(Input Tax)를 판매 시 징수된 VAT(Output Tax)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지불함. 만약, Input Tax를 Output Tax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됨.

- 부가세율: 0%, 3%, 7%, 22% 등 4종의 세율 적용. EU 가입 후에는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표준세율(22%)을 적용하게 됨. 재무부는 우대세율(0%, 3%, 7%) 적용 품목을 지정함.

- 수출업자는 수출통관 후 수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세무서는 면제요청 부가세액 조사 후 과다 환급요청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30%를 벌과금으로 부과함.

- 물품세(소비세)

- 물품세율 적용 품목: 승용차, 모터보트, 전자장비, 소금, 향수, 주류, 담배, 연료 등
- 재무부는 일정 한도에서 물품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물품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음.
- 물품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 환경저해 포장재에 대해서도 물품세를 적용 할 수 있음.
- 수출품은 물품세가 부과되지 않음
- 정부는 2002년 3월 10일부터 2년 이상된 수입 중고차에 대한 물품세를 인상. 수입 중고차는 차령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증가함. 단, 국산 중고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사회보장기금: 1999년 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사업주는 사회보장기금(ZUS) 납부액이 종업원 임금의 45%에서 26.39%(19.83~22.72%)로 낮아짐. 종업원은 임금의 19.71%(18.71%)를 납부함(사업주가 원천징수함).

- 사업주는 실업기금으로 2.45%를 추가로 납부함.
- ZUS 납부액 계산기준은 종업원 임금에 각종 부가급여, 시간외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임.

- 인지세

- 모든 계약, 공증, 정부인허가 신청시 적용됨.
- 재산 매각 시 부동산은 매각가액의 5%, 동산은 2%의 인지세 적용

□ 이중과세방지협정

- 폴란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와 배당, 이자, 수수료 등에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음.

#### □ 기업간 내부거래

- 국내지사가 해외본사로 지급한 재화·용역 구매가격은 국내지사의 정상비용으로 취급(내부거래를 증빙할 명확한 거래계약 필요)
- 단, 내부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면 조세당국은 내부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시장 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재무부령(1998): 내국기업이 동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 300백만 유로 이상의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기업은 거래내역을 세무소에 신고해야함(신고불이행시 25,000주위티의 벌과금 부과).

### (2) 개인소득세

#### □개 요

- 1991년 소득세법은 납세의 의무를 사업주로부터 피고용주로 이전시킴(임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업주 책임).
- 소득세율: 19%, 30%, 40%의 3단계(1996년: 21%, 33%, 45%, 1997년: 20%, 32%, 44%)
  - 19%: 연소득 29,624주위티까지 (37,024주위티 이하)
  - 30%: 연소득 29,624 ~ 59,248주위티 (37,024 ~ 74,048주위티)
  - 40%: 연소득 59,248주위티 이상 (74,048주위티 초과)
- 199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일부 전문직에 대해 단일세율 적용. 재무부는 사업성격, 지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세액 결정
- 납세자등록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세무소로부터 10자리 수의 납세자번호

호를 부여받음.

□ 납세자 기준

- 무한책임 납세자: 연간 183일 이상 폴란드에 거주한 개인(내국인)은 모든 국내외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함.
- 유한책임 납세자: 내국인이 아닌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과세대상소득

- 모든 현금, 비현금 소득을 포함(피고용자는 부가급여까지 포함)하며 재무부 증권, 저축성예금 등의 이자, 일부 농업관련 소득은 제외
- 취득 후 5년 이내 부동산 매각 시의 자본이득은 10%의 세율 적용
- 과세대상소득 차감항목: 기부금, 이혼수당, 강제 직업단체회비, 임대용 건축비 등
- 자선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 기부금, 종교단체 현금 등은 15%까지 추가공제
- 내국인(무한책임 납세자): 토지구입, 주택개량, 자녀 통학비용, 재교육 및 직업훈련비용, 사적 의료비용 등은 추가 공제됨.
- 폴란드내 배당소득: 20% 원천징수,
- 은행저축예금 이자: 무과세
- 주식거래 이득: 2000년까지 무과세

라. 노동 및 임금제도

## (1) 개요

### □ 저렴한 숙련 노동력 풍부

- 비교적 저렴한 숙련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학 석사 과정까지 교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고급인력도 많음.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숙련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며 노동 생산성도 증가 추세임.
- 전문직종은 대학졸업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폴란드에서 대졸학력을 갖춘 인력은 풍부하지 못함. 중앙통계국(GUS)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8세 이상 인구 중 2차 교육기관 수료자가 28.6%이고, 기술·직업훈련 과정 이수자가 58.5%로 나타나고 있음.
- 아직까지 첨단산업(금융, 정보통신 등)에 내국인 관리직종 인력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나 점차 이런 분야로의 내국인 취업이 증가하고 있음.
- 폴란드는 점차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어 지역에 따라 인력의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음. Warsaw, Sileska, Gdansk, Poznan 등에선 실업률이 낮고 고학력 노동력이 풍부함. 반면 동부의 Bialystok지역은 구조적 실업문제가 심각함.
- 무단결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간관리층의 이직률이 높은 수준임.
- 아직까지 영어를 비롯한 서유럽 언어 능통자는 부족한 편임.
- 폴란드 여성의 중간관리층 비율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퇴직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임.
- 최근 폴란드의 숙련노동자를 배출해 왔던 기초실업학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

<표 IV-2>

노동력 관련 주요지표

(단위: 천 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노동 인구	17,214	17,300	17,229	17,097	16,991
남자	9,307	9,397	9,340	9,283	9,215
여자	7,907	7,903	7,889	7,814	7,776
취업자 수	14,573	14,540	14,043	13,722	13,718
실업자 수	2,641	2,760	3,186	3,375	3,273
실업률	15.3	16.0	18.5	19.7	19.3

자료: 폴란드 중앙통계국(GUS)

(2) 노동법

□ 노동법(1974년)은 폴란드 내의 모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수차례 개정을 거쳐 1998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음.

- 단체협약: 노사 양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산업단위 단체협약은 노동(사회정책)부에 등록하고 기업단위 단체협약은 지방 노동감시국에 등록해야 함. 단체협약은 노동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다룰 수 없음. 기업주는 노동법에 규정된 최소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만 노동조건을 개정할 수 있음.
- 노동자 보호: 기업은 노동 및 위생조사국에 기술, 생산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함.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위생 및 근로자안전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함.
-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법규는 노동조합법(1991년 발효, 2002년 개정)임. 피고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계약에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노동조합법에 따라 유자격자 10명 이상의 의사결정으로 조합결성 가능. 국적, 인종 등 기초한 노동조합 결성은 불법임.
- 폴란드 노동법은 서구의 법규에 비해 엄격하며 노동분쟁에 대해 폴란드

법정은 노동자에게 관대한 편임.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은 엄격히 블루칼라로 제한되며 기업단위로 결성됨. 전국단위 노동조합 단체는 Solidarity(독립자주관리노조)와 All-Poland Trade Alliance(전국노동조합동맹), 노동조합연합(FZZ)가 있으며, Solidarity는 공산정권을 붕괴시키고 집권한 바 있으며 1997~2001년에도 집권하였음.
- 전국노동조합동맹: 조합원은 기업의 관리직, 교사, 공무원, 연금생활자 등이 많음. 좌파정당(SLD)을 지지하며 조합원은 약 50만 명임. 전 산업을 포괄하는 횡단적인 조직형태를 지님.
- 독립자주관리노조: 현장 노동자가 많음. 우파정당 지지. 조합원은 약 97만 명. 지역별·산업별 조직형태를 지님.
- 노동조합포럼(2002년 4월 발족): 화이트칼라, 기술자, 간호사, 경관 등이 많아 다른 조합에 비해 여성과 청년이 많음. 특정 정당과 연결되지 않고 조합원은 약 40만 명. 독립 노조에 의한 조직형태
- 전 조합원의 77%가 중앙정부, 지방자치체, 공공기업체, 생협 등에서 근무. 공적 조직의 조합원이 민간기업의 조합원에 비해 20배 이상. 서구 조직율의 4분의 1 정도임.
- 노동계약은 강제사항임. 노동법은 영구직, 임시직, 특별과업직, 3개월 이내의 수습직의 계약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의무는 노동관련 사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는 것이며, 기업의 M&A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협조가 필요함.
-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는 파업권이나 폴란드에서 파업의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임.
- 중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파업빈도가 1993년 7,443건에서 1997년 35건, 1998년 37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1999년의 경우 러시아와 EU로의 수출이 격감했던 농업과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광업, 공공보건분야에서 파업이 있었음. 총 920건의 파업이 있었는데 그 중 881건이 교원, 교육 분야에서의 파업임.
- 그 후 2000년 44건(그 중 33건이 간호사, 의료분야에서의 파업임), 2001년 11건, 2002년 1건이며, 2003년은 EU가입에 대비한 탄광개혁, 폴란드 국철 개혁 등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파업과 데모가 다발함.

#### □ 임금 및 부가급여

- 최저임금은 노동(사회정책)부가 지역, 부문, 업종 등에 관계없이 단일수준으로 매 분기마다 결정함.
  - 2004년 최저임금: 824주위티/월 (약 220달러)
  - 시간당 임금수준(중앙통계국 발표): 2003년 말 12.2주위티(약 3.1달러)
  - 단, 통상임금 대비 부가급여 수준에 관한 공식적 통계수치는 조사되고 있지 않음.
- 2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기업주는 전국 월평균 임금의 37.5%를 근로자의 사회보장기금으로 납부함.
- 병가의 경우 근로자는 35일분 정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업무와 관련된 병가의 경우 35일분 정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음. 35일의 병가 이후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음.
- 장애시 1개월 임금분의 보상, 사망시는 근무경력 10년 이내면 1개월 임금분, 근무경력 15년 이상이면 6개월분의 보상이 주어짐.
- 노동법에 의해 근로자는 연간 18일의 법정 휴가일수가 부여됨.
  - 신규 근로자는 근무개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휴가 없음.
  - 근무경력 1년 후: 휴가일수 18일
  - 근무경력 6년 이상: 휴가일수 20일
  - 근무경력 10년 이상: 휴가일수 26일



- 산휴: 산휴·육아휴가를 합친 기간은 첫째 자녀가 16주, 둘째자녀부터 18주, 다태아의 경우는 26주임. 산휴·육아휴가는 적어도 출산예정일의 2주 전부터 취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임금 및 부가급여 수준이 내국인 기업보다 높음.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2시간, 1일 8 ~ 8.5시간 이내이며 예외는 노동법에 지정되어 있음. 지속적인 조업이 필요한 산업이나 공공서비스사업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의 근무가 허용됨.
- 초과근무수당
  - 최초 2시간까지의 초과근무에 대해 정상임금의 50% 가산임률 적용
  -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또는 평일 9 p.m.~7a.m. 시간중의 초과근무에 대해 정상임금의 100% 가산임률 적용. 휴일근무시 추가로 20% 가산.
  - 일요일이나 휴일 근무일 경우 대체휴일 실시도 가능. 대체휴일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추가수당의 대상이 됨. 단, 매니저 등 관리직은 추가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초과근무시간 한도: 4시간/일, 150시간/년을 초과하지 못함.

#### □ 임시직과 일용직

- 임시직 고용은 노동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됨.
- 노동법에 따라 정규직에 부여되는 각종 보호조치가 임시직, 일용직에도 적용되며, 기업주는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함.
- 폴란드에서 임시직의 활용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음.

## □ 해고

- 해고는 노동법과 개별 고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해짐.
- 고용관련 일부 법규의 변경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퇴직전 4년 동안에는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음.
- 정규직의 경우 계약해지 최소 1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함(매 1년 근무마다 1개월씩 최대 3개월까지의 사전통보 의무 부여).
- 근무기간이 6개월일 경우는 2주 전, 6개월에서 3년까지는 1개월 전, 3년 이상은 3개월 전에 통고를 해야 함. 고용계약기간이 무기한인 경우 통고는 서면으로 행해지며, 서면에 해고사유를 밝힘. 통고기간이 없는 경우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함. 단, 정년이 가까운 피고용자, 임신, 육아휴가 중의 피고용자는 해고에 대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음.
- 노동법에 따라 기업주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피고용자는 사전통보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정상통보기간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단, 피고용자의 계약해지 주장이 근거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피해보상권이 주어짐.
- 잉여인력감축법(1989년)에 따라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기업주는 45일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해야하며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해 재무상태, 해고사유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회사와 노동조합은 결정기준, 결과, 해고일자 등에 관해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함.
- 잉여인력 해고대상이 된 근로자는 1개월분(10년 미만 고용시)에서 최대 3개월분(20년 이상 고용시)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단, 보상액은 법정최소임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해고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제기 사례는 흔하지 않음.

## V. 우리의 진출확대 방안

###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 가. 교역현황

##### (1) 연도별 교역현황

□ 폴란드는 중·동유럽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제 2위 교역상대국

- 대 폴란드 수출은 199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교역 사상 최고액(12.3억 달러)을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대 폴란드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수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함.
- 반면, 폴란드로부터의 수입액은 1996년 1.6억 달러를 정점으로 1997년부터 급격히 감소, 연간 0.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 2003년 들어 다소 증가하기 시작함.
- 양국의 교역은 2002년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 2003에는 수출은 9.5% 증가한 반면 수입은 56.1%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2004년에는 수출·수입 모두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폴란드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로 최근 양국간 수출입의 편차가 다소 줄어들고는 있으나 절대금액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 수입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EU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 확대 기대

- EU 가입에 따라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도 있으나 폴란드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현행 15.1%에서 EU 평균인 6.3%로 인하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는 TV부품, 휴대전화기, 선박용엔진 등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인하 효과를 보게 되어 2004년 수출은 전년 대비 10~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V-1>

연도별 한-폴란드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336	-36.3	349	3.7	382	9.5	416	96.8
수 입	46	-19.2	47	3.4	73	56.1	55	32.1
무 역 수 지	290	-38.6	302	4.1	309	2.3	361	64.5

주: 2004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  
자료: KOTIS

(2)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001년 이후 주요 수출입 품목 변화 추세

- 2000년까지 대 폴란드 주 수출품은 자동차, 폴리에스터 직물, TV 부분품 등이었으나 2001년부터 이들 품목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새로이 등장함.
- 수입의 경우에도 2000년까지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수산물 등이 주요 품목이었으나 자동차부품, 선박, 냉장고, 난방기기 등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IV-2>

대 폴란드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 출					수 입			
	2003		2004(1.~7.)			2003		2004(1.~7.)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칼 라 T V	68,760	-21	140,960	299.7	자 동 차 부 품	7,718	1,696.9	8,781	353.3
승 용 차	25,671	168.1	46,545	227.4	선 박	75	-84.1	6,452	8,543.3
자 동 차 부 품	43,509	8.7	34,798	25.8	철 강 및 형 강	14,638	1,827.7	4,582	-54.1
무 선 전 화 기	22,609	-28.5	29,260	380.8	냉 장 고	2,328	8,379.3	4,491	539.8
폴리에스터직물	27,359	-22.0	16,334	-5.5	가 축 육 류	2,628	-27.6	3,903	201.8
합 성 수 지	14,129	86.1	11,814	138.1	난방및전열기기	5,451	35.6	3,401	12.8
TV카메라및수상기	1,192	-43.7	9,570	1,301.4	무선통신기부품	5,265	-25.4	2,519	-36.4
보 조 기 억 장 치	10,682	43.7	9,555	230.7	원 동 기	1,981	59.9	2,090	826.6
에 어 컨	4,590	30.7	6,486	47.3	전 구	2,444	67.9	2,062	13.6
화 물 자 동 차	8,625	63.0	6,160	30.0	주 철	615	116.1	946	2,669.2

자료: KOTIS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중·동유럽 지역 최대 투자국가

- 2004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직접투자는 순투자(잔액)기준 52건, 52백만 달러로 중·동유럽 국가 중 최대이며, 프랑스, 미국, 독일 등에 이어 11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V-3>

대 폴란드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신 고		총 투 자		회 수		순 투 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5	1,205	58	646	6	126	52	5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37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며 도·소매 및 무역업이 8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5건, 그 외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이 각각 1건씩 진출해 있음.
- 주요 진출기업으로는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TV 생산 공장), SK 케미컬(PET 원료 생산 공장)등이 있음. 최근 LG전자는 므와바 공장을 확장하고 영국 웨일즈 공장의 생산설비 일부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우전자도 프루쉬코프 TV 공장을 확장하고 프랑스 공장을 이전하는 등 투자 확대 및 신규투자를 통해 폴란드를 중·동유럽 지역 본부화 내지 거점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표 V-4>

대 폴란드 주요 투자기업 현황

단위 : 천 달러

현지법인명	업종	총투자금액	투자잔액
DAEWOO-FSO MOTORS CORPORATION	승용차 제조업	236,829	192,329
DAEWOO MOTOR POLAND CORP.	승용차 제조업	133,928	133,928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POLAND SP Z O. O.	컬러TV 제조업	73,650	36,825
HYUNDAI MOTOR POLAND SP Z O. O.	자동차 판매업	19,992	19,992
SAMSUNG ELECTRONICS POLAND SP Z O. O.	컬러TV 제조업	16,700	16,700
SK EUROCHEM SP Z O. O.	PET 수지 제조업	19,285	15,085
DAEWOO ELECTRONICS POLAND SP Z O. O.	컬러TV 제조업	12,500	12,495
LG ELECTRONICS MLAWA SP Z O. O.	컬러TV 제조업	6,000	6,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2004. 10. 22 현재 수출입은행은 폴란드에 대해 승인기준으로 대출 91건, 365백만 달러와 보증 4건, 289백만 달러 등 총 95건, 394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여신 및 보증잔액은 총 21건, 122백만 달러임.

<표 V-5>

대 폴란드 여신지원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승인액	집행액	여신잔액
대출	364,690	355,218	100,279
수출자금	268,661	268,661	76,337
해외투자금	85,285	75,813	19,950
매입외환	10,745	10,745	3,993
보증	28,962	21,264	21,264
대외채무보증	25,662	17,964	17,964
대내채무보증	3,300	3,300	3,300
합계	393,653	376,482	121,543

<표 V-6>

대 폴란드 여신지원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 천 달러

	프로젝트명	승인액	여신잔액
직접대출	(주)대우의 DW-FSO 자동차제조	180,000	75,857
해외투자	SK케미컬(주)의 PET 수지제조	6,400	6,400
"	(주)LG상사의 PET 수지제조	3,040	3,040
외국법인에 대한사업자금	SK EUROCHEM의 PET 수지제조	14,300	10,010
대외채무보증	SK EUROCHEM의 PET 수지제조	25,667	17,967
대내채무보증	SK EUROCHEM의 PET 수지제조	3,300	3,300

## 2. 진출확대 방안

### 가. 진출 시 유의사항

- 폴란드는 중·동유럽 최대의 FDI 유치국으로 체제전환 초기부터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경쟁국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과 비교할 때 투자여건이 미흡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 불투명한 제도운용

- 체재/노동 비자의 발급수속 및 대응, 통관 과정에서의 신청수속과 해석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취득에 시간이 오래 필요함.

#### 복잡한 신고, 인·허가 수속

- 투자 진출시 중앙관청과 지방정부 등 여러 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기관에 따라 대응과 사무처리 속도가 달라 전체적인 관리가 힘들고 진출수속 진행과 일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결산 및 세무신고 절차도 매우 복잡함.
- 그러나 2004년 9월 3일 상거래자유법(기존 경제활동법을 대치하는 법)이 발효됨으로써 공공행정의 IT 인프라가 구비되는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 등록 및 말소, 기업의 각종 과세기초자료 제출 등이 가능해지고 행정처리 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 투자자에게 one-stop service 를 제공하는 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안심의를 반복으로 지연되고 있음.

#### 정책 일관성 부재

- 경제특별구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변경 및 그에 따른 부동산세의 갑



작스런 징수(본 건은 정부에 의해 경제특구 법안 개정으로 대처 중), 익년도 법인세율 시행 직전에 인하 폭을 변경하는 등 정책 시행의 사전 예측성이 낮고 일관성도 부족함.

□ 대외설명책임(accountability) 결여

- 각 종 제도의 변경시(예를 들어 EU 가입에 따른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통관 수속 변경 등)에 대하여 총론 설명에 그치고 수속절차 변경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대외설명책임이 부족함.

□ 인프라 정비 미흡

- 현재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고속도로망 정비가 지연(단 남서부 A4루트는 2005년 중 개통 예정)되고 있으며 폴란드 남서부는 프라하, 부다페스트와 비교하면 자녀교육 등의 생활환경이 열악함.
- 그러나 폴란드는 EU 가입으로 향후 10년간 758억 유로 상당의 EU 기금을 지원 받아 도로건설 등 인프라구축, 농업발전, 환경보호 개선 등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어 인프라 여건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 토지취득 곤란

- 폴란드 토지법(Land Act)에 의하면 폴란드가 EU에 가입하더라도 향후 12년 동안 외국인의 농토 및 삼림지대 매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특히, EU 비회원국 투자자의 부동산 매입은 상당히 어려움.

나. 폴란드의 EU 가입이 한국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 기대

- EU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폴란드의 평균 관세율(15.1%)이 EU 수준(6.3%)으

로 인하됨으로써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특히, 우리나라의 50대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현행 10.9%에서 2.7%로 8.1% 포인트 인하되며, 컬러TV 및 부품, 자동차부품, 휴대용전화기, 차량 디젤엔진, 선박엔진, VCR, 소형변압기, 고무장갑 등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 짐.

#### □ 제도의 투명성 및 절차 간소화

- EU 법규의 채택으로 각종 제도가 투명해지고 절차가 간소화 되어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가 발생함.
- EU 가입에 따라 EU의 기술표준, 환경 및 안전관련 기준을 도입하게 됨으로 지금까지 폴란드 국가 기준에 따라 받아 오던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함.

#### □ 수입규제 조치는 EU 기준으로 확대

- EU가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관세(10개 품목), 상계관세(1개 품목), 세이프가드(철강 7개 품목)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신규회원국에도 확대 적용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다. 진출전략 및 진출 유망분야

#### □ 관세인하 품목의 수출 확대에 노력

- EU 가입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전자제품이 16개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기계류, 섬유류, 자동차, 자동차용 타이어, 코팅판지, 출판물 등이며 영상음향장치의 관세율이 21%에서 4%로 인하되므로 인하폭이 가장 큼.
- 외교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관세인하 효과와 우리기업의 비교우위지수(RCA, MCA)를 감안하여 산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열기기, 합

섬직물, 컴퓨터부품, 자동차, 침대변형 소파 등 20개 품목이 시장 확대가 유망한 품목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진공펌프 등 30개 품목이 시장 개척이 유망한 품목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 들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 선점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확대 노력

- EU 가입, 경제성장과 구매력 증가에 따라 소비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에 따른 플라스틱 수요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현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확대에 노력해야 함.
- 최근 폴란드는 플라스틱 수요가 생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동·유럽 지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200% 이상 늘어날 것이라 함.
- 폴란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EU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증가율면에서는 유럽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소득증가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됨.
- 수도물의 수질이 열악하여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냉·온수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통신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 수요 증가, 인터넷 보급률 증가에 따른 컴퓨터 수요 증가가 예상됨.

□ 반덤핑관세 품목은 현지 투자 진출도 고려

- TV브라운관, 기억장치, 상업용 전자저울 등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거나 현지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진출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기는 하나 가파른

상승추세(1990~2001년 중 명목임금이 5배 이상 인상)에 있어 단순히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진출은 지양하고 현지화된 제품생산, 물류효율화 전략차원에서 진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경영효율성면에서는 투자리스크 완화, 노사안정, 임금대비 생산성, 주주권익보호 등에서 강점을 지닌 반면, 기업윤리의식, 외부문화에 대한 폐쇄성, 높은 통신비 등이 약점으로 평가되었음.

## 라. 정책과제

### EU와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

- 수입규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와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수입규제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위한 협상 추진이 필요함.

###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이미지 제고

- 기업차원의 마케팅외에 국가차원의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월드컵 이후 달라진 한국의 이미지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호적인 이미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요망됨.

### 현지 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 시스템 구축

-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지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의 구축과 정확한 정보 입수를 통한 효율적 대응과 우리의 주도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